

【 25 】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8. 14.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대책마련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피해 최소화.

□ 주요골자

-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기획감사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각 실과소의 재해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편성. (안 제2조 제2항)
-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은 각 기관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안 제3조)
- 본부장은 재해기간 (매년 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5조)

##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③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기획감사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각 실과소 재해대책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④통제관 및 담당관과 각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등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영관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의정부 경찰서
2. 육군제25사단, 육군제26사단, 육군제65사단
3. 동두천 교육청
4. 한국통신공사 의정부중앙분국 · 동두천전화국
5. 한국전력공사 의정부지점 · 동두천지점
6. 건설부 의정부국도유지 건설사무소

## 7. 철도청 의정부 보선 분소

8.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본부장은 재해기간(6. 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유관기관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